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4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황운하·강경숙·신장식

김준형 • 박은정 • 전용기

김재원 • 백선희 • 서왕진
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대면회의로하되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 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 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,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」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 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 제4항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전단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- 2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생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현행 략) 과 같음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성폭」 ④ -----다음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-----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 설>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에 해 당하는 내용의 정보 2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<신 설>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|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

	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
	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
	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
	<u>정보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